

서울특별시종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
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2004. 10. 14

재 무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허가 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하여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것임.

I. 개정이유

2002. 2. 4일 종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되고,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현행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함.

○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안 제2조).

○ 토지수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안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안 제6조).

III. 검토의견

○ 2002. 2. 4일 종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 입법되었는데 그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되었고, 또한 2002. 2. 4일 종전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었는 바, 그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시의적절하게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며, 이에 현행 조례상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된 법 제명에 맞게 자치법규(조례) 일괄정비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IV. 관계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 2. 4 법률 제6655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 2. 4 법률 제6656호)